



제420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 의무화〉

■ 장종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5857호)

2025. 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오 세 일

목 차

I . 개요	1
--------------	---

II . 검토의견	2
-----------------	---

I. 개요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장종태의원 등 12인

(2) 제 안 일 : 2024. 11. 26.

(3) 회 부 일 : 2024. 11. 27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27조).

II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잦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청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 두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16조 및 제27조).

현행	개정안
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<u>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 ----- <u>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</u> ----- ----- ----- <u>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</u> 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 , 장애인용 쇼핑	③ ----- ----- <u>보청기기 및 보청기기</u>

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. 제2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<u>보청기기</u>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보조장비</u>----- ----- -----. 제27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<u>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2. 검토의견

□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재가장애인은 약 263만 명으로, 이중 청각장애인은 약 46.1만 명으로 추정됨.

- 청각장애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84.4%로, 2017년 73.2%, 2020년 74.0%와 비교하면,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으며, 인공와우 수술을 한 경우는 3.8%로, 2017년 3.7%, 2020년 4.2%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.¹⁾

□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 특정 공간 안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주변 소음으로 청취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‘보청기기 보조장비’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.

- 참고로,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공항이나 마트와 같이 사람이 많거나, 넓은 장소에서 청각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로, 방송 전파 강도 및 주파수 조정을 통해 방송 정보와 음향 증폭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임.

<보청기기 보조장비 예시>

01

LT-700송수신세트

22 06 25 / 청각 보조공학기기 /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

장애유형	청각
제한연수	3
제품가격	2,202,670원





와이엔씨솔루션(주)

terrie@yncsolution.co.kr
031-5175-4412

제품사양

- 무선송신기(이동형) 사양
- RF 주파수 범위 : 72.650MHz ~ 74.750MHz / 채널 수 : 21ch
- 송신 범위 : 최대 45m / 주파수 정확도 : ±0.005%
- 송신기 안정도 : 50PPM / 신호 대 잡음비 (SNR) : 70dB
- 가청 주파수 : 50Hz~15KHz (±3dB) • 크기 : 130(h) × 25(w) × 76(d)mm / 무게 : 111g
- 배터리 타입 : AA사이즈 알카라인 또는 NiMH 배터리 2개
- 무선수신기 사양 • 채널 선택 가능, 볼륨 조절 가능
- 루프 입력 : Dual 3.5mm 루프(LA-430) 입력
- OLED 디스플레이 : 밝기조절 가능, 배터리 상태, 유닛 ID, 채널, 볼륨, 충전 상태 표시, 채널명 변경 가능
- 크기 : 96(h) × 50(w) × 17(d)mm • 무게 : 45.4g

기능 및 특징

-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가 Telecoil 모드를 통해 별도의 장치 없이 직접 보청기나 인공와우로 주변 소음 없이 깨끗하게 무선으로 수신 가능한 이동형 무선 송수신기 세트입니다.
- 깨끗한 수신을 위한 전용 주파수 대역 사용으로 회사 내 또는 외부 업무와 활동 시 혼선 없고 끊김 없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1위 품질 제품입니다.
- 국내 유일한 이동형, 착용형 히어링 루프 기술의 수입 제품입니다.
- 업무 회의 및 다자간 대화 시 콘퍼런스 마이크를 이용하여 깨끗한 음질의 회의가 가능합니다.
- 상당 및 업무 지시 시 클립형 핀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깨끗한 음질의 대화가 가능합니다.

자료: 한국장애인고용공단. (2024). 2024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.

1) 보건복지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. (2023).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.

□ 다만, 현행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,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대해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²⁾에서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,

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구체적인 종류에 관해서는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³⁾ 및 [별표3]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(참고자료 1: [별표3]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),

이러한 법령의 체계 및 비치용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 수요 등을 고려하면,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법령(시행규칙 [별표3])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.

- 참고로, 현재 개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비치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⁴⁾

2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.

3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(비치용품의 종류등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.

4) [시행 2025. 12. 21.] [법률 제20594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

3.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

가. 보건복지부

- 현행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휠체어, 점자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개별 규정하고 있는바, 개정안에 따른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‘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[별표2]’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‘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관한 [별표3]’에 추가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경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 시 비용 부담 및 예산 확보⁵⁾, 설치 및 비치 기간을 고려할 경우, 시행일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나. 한국장애인개발원

- 난청인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에는 동감하지만, 이용상의 범용성, 경제성 및 설치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텔레코일존과 호환되는 보청기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기 보조장비(설비)는 법률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(또는 시행규

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, 전동보장구충전시설(전동 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,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,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,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.

5) 모든 시설에 보조장비를 의무비치 할 경우, 과도한 비용부담(최소 180억 발생) * 단가 200만원 기준

칙) 내지 설치 해야할 편의시설(또는 시설기준)로 규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문 의 처
02)6788-5502

〈참고자료 1: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〉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3]
<개정 2022. 7. 26.>

대상시설		비치용품	
		의무용품	권장용품
제 1 종 근 린 생 활시설	읍·면·동사무소	점자업무안내책자, 8 배율이상의 확대경,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	편의시설안내지도
	우체국, 전신전화국	8배율이상의 확대경,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	점자업무안내책자
	공공도서관	보청기기	저시력용 독서기
문화 및 집회시설	공연장, 관람장	보청기기	점자공연안내책자
	전시장, 동·식물원		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
판매시설	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도·소매점		음성계산기
	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 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 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 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다)	장애인용 쇼핑카트	
교육연구시설	도서관	저시력용 독서기, 음 성지원컴퓨터 및 보 청기기	점자프린터, 컴퓨터 (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)
업무시설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(공중이 직접 이용 하는 시설에 한한다)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	점자업무안내책자(시· 군·구청에 한한다), 휠 체어, 8배율 이상의 확대경,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	점자업무안내책자, 편의시설안내지도, 컴퓨터(정보통신보조 기기를 포함한다)
숙박시설	관광숙박시설		점자관광안내책자
장례식장		입식 식탁	
운동시설	수영장	입수용 휠체어	

비고

1.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, 민원실, 안내실,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
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,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
있다.
2. "보청기기"는 보청기,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.
3.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, 장애인
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.